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-113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

연번	자치법규명	개정 내용	비고
1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20% 감면	조례안 제1조
2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할인	조례안 제2조
3	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, 수강료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3조
4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등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4조
5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100분의 20 할인	조례안 제5조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관련부서 협의 완료(총무과, 자치행정과, 문화예술과, 생활체육과, 아동청년과, 교통지도과)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10. 7. ~ 10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6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감면대상에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"를 신설하고 그 감면비율은 "20%"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: 100분의 20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 2]
<u>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</u>(제10조제5항 관련)
<table><tr><th>감 면 대 상</th><th>감면비율</th></tr><tr>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td><td rowspan="5">전액면제</td></tr><tr>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별 관련)</td></tr><tr>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</tr><tr>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</tr><tr>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td></tr></table>※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td><td>[별표 2]
<u>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</u>(제10조제5항 관련)
<table><tr><th>감 면 대 상</th><th>감면비율</th></tr><tr>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td><td rowspan="5">전액면제</td></tr><tr>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별 관련)</td></tr><tr>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</tr><tr>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</tr><tr>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td></tr><tr><td><u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</u></td><td><u>20%</u></td></tr></table>※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td></tr>
</table>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

② (생 략)</td><td>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-----

----------.
<u>1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</u>

②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/table>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 ① ----------.
<신 설>	1.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1. ~ 3. (생 략)	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4.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등) ①·② (생 략)	제7조(사용료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	③ ----------. ----------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소지자 : 100분의 20

5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(생 략) - 비고 - 1. ~ 25.(생 략) <신 설>	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 - 비고 - 1. ~ 25.(현행과 같음) 26.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

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별표 2의 감면대상에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”를 신설하고 그 감면비율은 “20%”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제13조의3제1항에 제17호

- 1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1조제1호

- 1.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: 100분의 20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- 2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조현욱 (☎3153-8343)